

(A+) 시니어 복지용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대상자의 진한 농담이나 스킨십 등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업무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으로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종사자와 수급자 간의 올바른 대체를 통해 문제발생 및 갈등요인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가.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시설의 종사자, 사용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성폭력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 언어적 행위

-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③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④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⑤ 회식자리 등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②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4) 기타

- ①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3. 성폭력의 예방 및 대응방법

가. 요양기관에서의 예방 및 대응 방법

- 1)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1년에 1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성폭력 피해자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3)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직원들 사이에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성폭력을 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개인의 대처방법

1)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① 서비스 이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②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③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2)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①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3)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①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4)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5) 음담패설을 삼간다.

4. 성폭력 처리지침

가. 성폭력 고충처리는 의뢰→상담→처리의 순으로 진행하며 고충처리담당자 및 처리내용은 고충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나. 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해 성폭력 고충전담을 두되, 고충처리 담당자는 이를 겸하도록 한다.

5. 성폭력 신고기관.

가. 국가범죄신고- 112

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다. 서울 강동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02) 3449-7348

라. 해당 시설장- 010-4787-5075